

# 2019년도 제23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11. 1.(금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승수 위원(분과위원장)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3건(안전번호 제 2019-139905호~139984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전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주요내용

- A 위원 : ★★★★★ 웹하드 사이트의 음악 FREEDOM(가수 악동뮤지션) 등 123건의 게시물들은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이 타당함
- B 위원 : ★★★★★ 웹하드 사이트의 음악 FREEDOM (가수 : AKMU 악동뮤지션) 등 123건의 게시물 안건번호 제2019-139905호~139984호) 은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 조의 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본 123건의 게시물은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 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됨
- D 위원 :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음악 콘텐츠에 관한 사안들로서, 그 중에는 예컨대 음악 새 사람(가수 송하예), 음악 우리 시작해도 괜찮을까요(가수 정준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불법 복제 전송물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제238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1.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